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42

발의연월일: 2025. 2. 6.

발 의 자:전현희·이학영·박홍배

조인철 • 윤건영 • 안태준

한준호 · 서미화 · 이병진

김동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 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 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과 기소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적격

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다음 각 호"를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사처는 예산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 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25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을 "정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보"를 "전보, 적격심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40명"을 "60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0명"을 "40명"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사처검사 적격심사)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 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수사처검사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수사처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처장에게 그 수사처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 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수사처검사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처장은 제2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수사처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제1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을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	설치와 독립성) ①
범죄등에 <u>관하여 다음 각 호</u> 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와 그 유지</u>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	<u><삭 제></u>
<u>사</u>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u><삭 제></u>
<u>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u>	
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	
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	
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u>그 유지</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수사처는 예산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생 략)	제8조(수사처검사) ① (현행과 같
	슬)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	②
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	
함하여 <u>25명</u> 이내로 한다.	<u>50명</u>
③ 수사처검사의 <u>임기는 3년으</u>	③ <u>정년</u>

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 다.

④ (생 략)

- 제9조(인사위원회) ① 처장과 차 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 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 다.
 - ② ~ ⑥ (생 략)
-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생략)
 -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고, <u>40명</u> 이내로 한 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 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 한다.
 - ③ (생 략)
-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u>2</u><u>0명</u> 이내로 한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인사위원회) ①
<u>전보, 적격심사</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u>60명</u>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40</u>
<u>명</u>
제14조의2(수사처검사 적격심사)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 ⑤ (생 략)

⑥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 <삭 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 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 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 항 각 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처검사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 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수사처검사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수 사처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 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의결을 거쳐 처장에게 그 수 사처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결을 <u>하기 전에 해당 수사처</u> 검사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 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처장은 제2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 통령에게 그 수사처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 ⑤ (현행과 같음)

한)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 한) ① ----- 고위공직 자범죄등에 관한 -----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③ (생 략)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 <삭 제>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 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 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 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 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 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 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 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